

## 제96회 KAI Forum : Discussion Paper “보험계약에 대한 예비적 견해”에 관한 공청회

발표자: 김은경(한국회계기준원 연구원)

### ■ 배경설명

- Timetable : 2007년 11월까지 DP 에 대한 comment 를 받아 2008년부터 검토예정이며, 2009년 공개초안, 2010년 기준서 발표예정임. (2011년부터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)
- IFRS 4(Phase I)의 주요내용
  - 기준서의 적용범위: 보험(재보험)계약 및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금융상품
  - 보험계약의 정의: 보험자가 미래 불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약정(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)
  - 보험부채의 적정성 평가: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을 통한 적정성 평가
  - 기타: 내재파생상품의 평가, 저축요소의 분리,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금지

### ■ DP 의 주요내용

- 현행유출가치: 보험자가 보고서일 현재 유효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즉시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. 3 building blocks를 이용하여 측정(미래현금흐름, 화폐의 시간가치, 마진)

### ■ 계약자의 행위, 고객과의 관계, 신계약비

- 계약자행위: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보장권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미래 보험료로부터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
- 신계약비: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, 미래 보험료수입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보험부채의 평가에 반영

### ■ 보험계약의 측정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

- 보험계약 관련 자산(asset backing insurance contract)
- 회계단위(unit of account)
- 재보험(reinsurance)
- 보험부채의 신용특성
-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(unbundling)

### ■ 계약자의 참여

- 배당보험부채 측정시에는 현금흐름 시나리오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추정치가 반영되어야 함
- 보험자 의무의 존재여부는 IAS 37(의제외무 관련 규정)에 의해 결정

### ■ 보험부채의 인식, 제거, 표시

- 보험부채의 제거: 의무의 이행, 취소, 만료 등으로 인함(IAS 39의 금융부채 제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할지는 미정)
- 보험료의 인식: 수익 및 예치금으로 인식할지 미정

### ■ Phase II가 국내회계에 미치는 영향

- 보험부채 평가 위한 시스템구축 및 재무비율, 손익 등의 급격한 변동 완화를 위한 체

계적 방안 마련 필요

-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
- 1년 이내 계약 종료되는 non-life 상품에 대해서도 시간가치 효과를 반영
- 신계약비의 발생시 비용처리
- 보험료의 예수금 인식시 손익계산서의 수익 감소 가능성

#### 토론자: 정세연(삼일회계법인 상무)

- 신용위험의 반영: 보험부채 측정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면, 보험회사의 신용위험과 더불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반 법규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, 실제로 이러한 신용위험의 반영의 어려움 및 신용위험의 구분공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채측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의견개진 할 필요가 있음
- 리스크마진: 마진의 산출에 대한 실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의 산출방법론에 대한 예시를 충분히 제시할 것을 건의함
- Unbundling: 개념적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, 실무 상 상당한 구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의 예시 및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구분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
- 수입보험료 회계처리: 보험회사 고유영업 위험에 대한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수익으로,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IAS 39를 적용하여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의 회계처리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- 보험부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: 보험부채를 현행유출가치로 측정할 경우 그 변동성으로 인한 economic mismatch 및 accounting 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fair value option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도입할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재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#### 토론자: 신상만(교보생명 경영관리실 경리팀 팀장)

- 마진과 최초 계약체결 시 손익인식
  - 리스크마진의 계산은 DP 에 제시된 두가지 대안 중, 실무적으로 보험사들의 경쟁, 타사와의 관계, 언더라이팅 정책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으므로, 두번째 대안(day1 gain 인식가능)이 보다 타당함.
  - 마진의 회계적, 논리적 타당성 검증에 앞서, 실무적으로 산출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 (측정에 대한 효익, 비용 및 그 신뢰성에 대한 고려)
  - 실무적인 영향(계약자들 간 형평성, 불만문제, 재무건정성 규제 문제 등)을 고려할 때 day 1 profit/loss의 인식은 극히 제한적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임
- 장래 보험료
  - Guaranteed insurability의 요건에 의하면 유니버설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미래 보험료 수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손익의 변동성에 따른 기간별 손익의 왜곡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도 미래 보험료 수입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
  - 장래 보험료의 인식에서 미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, IASB는 현재

계약과 미래계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임.

- 보험부채의 신용특성: 보험부채의 신용특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 보험회사의 신용특성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며, 보험부채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.
- 기타
  - 보험부채의 제거: IASB는 IAS 39 금융부채 derecognition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, 휴면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  - 계약자배당: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와 같이 확정된 손익에 대해서만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.
  - 보험부채의 변동: 기간손익의 심각한 훼손을 막고, 자산과의 accounting mismatch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.

#### 토론자: 안치홍(밀리만코리아 소장)

- 보험부채의 현행유출가치 평가와 관련한 계리적인 가정의 적정성에 관련한 논란이 국내에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임.
- 신계약비를 비용처리 하더라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의 판매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에 이익이 실현될 수도 있음. (Negative Reserve)
-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와 관련하여 국내의 상품은 대부분 “상호의존적”이라고 결론될 가능성이 많음
- 보험부채의 평가에서 기업고유의 현금흐름은 제외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의 “유지비”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야 하며, 이러한 구분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
- 서비스 마진의 구분을 위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음
- 리스크 마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두번째 대안을 지지함